

집합투자기구 공모주식 배정 기준

2005.03.24 제정
2005.09.30 개정
2007.09.11 개정
2009.02.04 개정
2012.07.27 개정
2017.05.22 개정
2018.08.14 개정
2023.09.08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① 이 기준은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이라 한다)가 회사의 집합투자기구에서 회사명의 통합과세계좌, 개별 일임계좌, 기타 통합계좌 등으로 공모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배분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공모주 수요예측을 한 경우 주간증권사의 배정 수량대로 배분 **하여 청약**한다.

제2장 공모주식 청약 및 배정

제2조(공모주식 수요예측 참여) ①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참여 여부는 각 운용본부에서 주식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운용역(이하 “운용담당자”이라 한다)이 관련 법규와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규약, 정관, 투자설명서 및 운용전략 등(이하 “관련법령”이라 한다)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②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참여 가격은 주식운용업무를 총괄하는 임원(이하 “주식운용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결정한다.

③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신청 수량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의 크기, 주식편입가능비율, 운용방향이나 전략 및 주관증권사의 배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운용담당자가** 결정한다.

④ 운용담당자는 각 운용본부에서 공모주식의 수요예측에 응할 집합투자기구 및 주식수를 취합하여 당해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이전에 확정, 기안 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 한다.

제3조(공모주식 청약 및 배정의 원칙)

① 회사의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공모주식 청약 주식수는 수요예측 참가 결과 배정 받은 당사의 청약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각 집합투자기구별 공모주식 청약 주식수는 배정 받은 주식수를 사전신청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변동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

우에는 주식운용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③ 공모주 청약신청을 위한 집합투자기구별 배정내역은 주식운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운용담당자는 집합투자기구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및 참여가격정보 등(이하 “수요예측 참여 신청내역”이라 한다)을 주식매매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수요예측 참여 신청내역과 기업분석보고서(기업인수목적회사는 예외로 한다)를 운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주식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의 수요예측 참여 신청내역을 토대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청약 신청 및 제반업무를 하여야 한다.

⑥ 주식매매담당자는 공모주식을 청약한 당일 집합투자기구별 공모주식 청약내역을 운용본부장 승인을 받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금지행위)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 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행위. 다만, 주식운용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별도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한다.

② 의무화약기간내에 **화약 후 배정받은**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

③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하는 행위

④ 그 밖에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

제5조(공시)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 간접투자기구 공모주식 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은 이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2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09월 8일부터 시행한다.